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안 건 명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
관한 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9월 3일(수)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

2014년 9월 10일(수)

4. 관계법령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(법률 제11275호, 2012. 8. 2 시행) 제12조

5. 검토의견

0 본 조례의 제정은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,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.

0 2007년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시행 이후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은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등 정책적 위상이 높아졌고, 사회적경제의 개념 확산 및 발달에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양적·질적인 성장을 가져 왔음.

0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률 하락, 사회안전망 취약, 청년실업 증가 및 사회 양극화 심화 등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의 대두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, 최근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적경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및 자본 중심의 시장경제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음.

그러나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, 마을기업 등 각종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급격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, 고용분담률이나 인프라 측면에서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음.

0 따라서 각종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성에 필요한 시책마련과 지원근거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, 향후 부서별로 체계가 달라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, 자활기업 등의 업무를 통합해 관련 기업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,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판로 개척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지역간 민·관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등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“사회적경제지원센터”의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0 본 조례안 제4조제1호에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”으로 규정하였으나 소속 행정기관 범위에 “보건소”는 해당되고, “동”은 하부행정기관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구 본청, 보건소, 동”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6. 관계법령

사회적기업 육성법

[시행 2012.8.2] [법률 제11275호, 2012.2.1, 일부개정]

- 제12조(공공기관의 우선 구매) ①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(이하 "공공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(이하 "사회적기업제품"이라 한다)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-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